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50126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지배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명

담당변호사 김준성

변론 종결 2021. 3. 12.

판결 선고 2021. 4. 30.

주 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의 1/9 지분에 대하여 2018. 4. 16.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D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1/9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2018. 7. 11. 접수 제1289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소외 D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차전158155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9. 9. 30. 'D는 원고에게 30,532,303원 및 그 중 17,278,189원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10. 17. 확정되었다.

2)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2020. 1. 14. 기준으로 31,168,519원이다.

나. 피고와 D 등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협의

1) 피고의 배우자이자 D의 부친인 소외 E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이하 E가 소유하던 1/2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

2) E는 2018. 4. 16. 사망하였고, 사망당시 상속인으로는 피고와 D 외 자녀인 소외F, G이 있었다.

3) 위 상속인들은 2018. 4. 16. 이 사건 지분의 상속과 관련하여 D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9 상속지분(= 이 사건 지분 1/2 × 법정상속지분 2/9)을 포함하여 피고 외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모두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2018. 7. 11.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28956호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의 재산상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상속지분이 D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던 반면 D는 그 무렵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무 외에도 H회사, I 회사, J회사, K은행 등에 약 4,000만 원 상당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 갑 6호증의 4, 동작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L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사해행위의 성립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취지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D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 및 다른 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부분을 포함시킨 것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며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과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E는 사망하기 수 년 전부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는 E와 단 둘이 동거하면서 E를 간호·수발하였다. 피고의 구체적 상속지분을 산정할 때 위와 같은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

2) 판단

가)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고(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참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위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 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툼이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4,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78. 4. 11. E와 혼인한 사실, E가 사망하기 전 호흡기 질환 등으로 통원치료 또는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가 E와 동거하며 E를 간호·수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다툼이 없는 사실, 갑 4, 6호증의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는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는바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E에 대한 간호·수발은 부부 일방이 타방에게 부담하는 부양·협력의무 수행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2 E는 2007. 7. 18.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서울 동작구 M 대 103㎡와 그 지상주택을 3억 1,000만에 매도하였는데, E와 피고는 그 직후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을 취득한 점(E,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취득의 자금원이 E 소유의 위 대지 및 그 지상건물 매도대금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3 E의 자녀들 역시 E와 왕래하며 부양의무를 일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특별하게 기여분이 인정된다거나 피고에 대한 기여분 인정으로 피고의 구체적 상속지분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함으로써 D의 구체적 상속지분이 법정상속지분에 미달하도록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충분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피고의 위 주장 속에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선행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이나 증거로 피고의 '악의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인정하기 역시 부족하다).

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등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D의 상속지분에 관한 협의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지분 중 2/9 지분 즉 이 사건건물의 1/9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8. 7. 11. 접수 제1289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소병석

부동산의 표시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4층 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목 : 대 면적 : 33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65.80㎡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337분의 30.89

(이중 피고가 에게 반환하여야 할 9분의 1 지분 "말 의 2분의 1지분 중 9분의 2 지분")

· 미 상 ·